

의안번호	2209829
의 퇴 인	강훈식 의원
회 답 일	2025.4.22.
추 계 번호	25B2292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2,500만원, 2030년 1억 2,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억 2,500만원(연평균 1억 2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등 (안 제5조의2제2항)	125	125	125	125	125	625	125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가이드라인 수립 주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노사발전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의2(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등) 신설	사업장 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수탁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변경된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는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의2(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등) 신설	—	• 미대상(제1항) － 개정안은 사업장 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수탁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변경된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는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		○	• 비용추계(제2항) －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산하며, 매년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(유사사례)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
 - － (주요내용) 사업주의 능동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·보급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

- (발주기관) 노사발전재단
- (용역예산) 1억 2,500만원(2023년)
- ※ 가이드라인 개발비 4,000만원, 제작·보급비 8,500만원¹⁾

[표 4] 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등(안 제5조의2제2항)	125	125	125	125	125	625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가이드라인 수립 주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노사발전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- 본 추계 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가이드라인 수립 주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

1) 자료: 노사발전재단 공고 제2023-003호